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중간·기말시험 준수사항

2023. 4. 10.

I. 총칙

1.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칙 제87조(징계), 학사운영에 관한 내규 등에 따라 시험 부정행위자는 제적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고, 해당 과목은 “F”로 처리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원만하고 공정한 학사관리를 위하여 감독자와 응시자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2. 시험감독보고서의 기재와 제출을 제외한 아래의 준수사항의 경우 담당교수의 특별한 지시나 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지시나 조치가 우선합니다.

II. 시험장소 입실 및 시험시작 전

3. 감독자는 시험문제를 밀봉하여 시험장으로 이동하고, 시험장 안에서 개봉합니다.
4. 응시자는 시험당일 학생증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필기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5분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5. 감독자는 안내사항을 시험시작 전에 구두 및 문자로 공지합니다.
6. 시험 관련 개인자료 및 핸드폰,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는 전원을 끄고 가방이나 서류철·파일 등에 넣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시험장 앞 또는 뒤 쪽에 놓습니다(서랍 속은 완전히 비움).
7. 시험이 시작된 후 입실한 경우는 시험감독보고서에 기재됩니다.
8. 감독자는 답안지를 먼저 나누어 준 후 문제지를 나누어주고, 응시자는 문제지를 뒤집어 놓습니다.
9. 시험시작 전 문제지를 들추어 미리 보는 행위는 금지되며, 발견시 시험감독보고서에 기재됩니다.
10. 답안지에 성명, 학번, 과목명 등을 기재하지 않아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그 답안은 영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점의 공정성을 위하여 성명 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등 담당교수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11. 감독자의 지각행위 등에 대해서 다른 감독자는 시험감독보고서에 기재합니다.

Ⅲ. 시험시간 중

12. 시험실 좌석에서는 신분증, 통신기능이 없는 시계 및 필기구 이외의 물품(메모지, 책받침 등 포함)을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 등 전산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기기는 시계용으로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13.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감독자의 시험시작 및 종료선언, 종료시간 예고를 따릅니다.
14. 감독자는 해당시험에 허용된 법전인지를 확인하고 허용되지 않은 법전의 경우에는 수거하며, 이는 시험감독보고서에 기재됩니다.
15. 감독자는 응시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답안지의 감독자 확인란에 서명합니다. 학생증이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이 없는 응시자는 시험종료 후 감독자 전원 앞에서 학생증이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으로 신분을 확인하며 이는 시험감독보고서에 기재됩니다.
16. 응시자가 시험시작 후 화장실에 가야하는 상황에서는 감독자 또는 행정실 직원과 동행하여야 합니다.
17. 시험 중 공지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감독자는 구두 및 문자로 공지합니다.
18. 시험 도중에 입실한 경우 시험 종료 시간은 타 응시자와 동일합니다.
19. 응시자는 시험 진행에 관하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불응 시 해당 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거나 관련사항은 시험감독보고서에 기재됩니다.
20. 시험시간 중 부정행위로 적발된 경우에도 응시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감독자는 다른 응시자의 시험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증거물 등을 확보하고 시험감독보고서에 관련사항을 기재합니다.
21. 감독자 간 불필요한 대화는 금지되고, 감독자가 감독과 관련 없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다른 감독자는 이를 시험감독보고서에 기재합니다.

Ⅳ. 시험종료 후

22. 시험시간 중 응시자가 답안지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 감독자는 제출하지 않는 답안지도 회수하여 파기합니다.
23. 감독자는 시험시간이 종료되는 즉시 큰 목소리로 시험종료를 알립니다.
24. 응시자는 시험종료 공지와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나 강의실 앞 또는 뒤의 공간으

로 이동합니다.

25.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할 수 없습니다.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감독자는 이러한 사항을 시험감독보고서에 기재합니다.
26. 감독자는 답안지를 수거한 후 시험과목, 응시인원, 감독자명 등을 기재하여 지체 없이 행정실 또는 담당교수에게 전달합니다.
27. 감독자는 작성한 시험감독보고서를 행정실에 제출·보고합니다. 기타 증거물도 행정실에 제출합니다.
28. 감독자의 부정한 감독행위에 대해서 다른 감독자와 응시자는 시험감독보고서를 (활용하여) 행정실에 제출·보고할 수 있습니다.

끝.